

# 번영로 서한이다음 프레스티지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안내문

## I 공급개요 및 일정

- 위치 : 번영로 서한이다음 프레스티지
- 공급 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9층 3개동 총 109세대 중 일반분양 109세대
- 입주 예정시기 : 2024년 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변경 될수 있으며 추후 통보함)
- 공급 대상 : 일반분양 109세대 중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대상자 10세대

주택 구분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타입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공급 면적			
민영 주택	82.3842A	82A	82.3842	25.7006	108.0848	67.0747	175.1595	36
	82.9647B	82B	82.9647	26.4372	109.4019	67.5501	176.9493	8
	84.7315A	84A	84.7315	26.5788	111.3103	68.9856	180.2959	47
	84.7048B	84B	84.7048	26.8471	111.5519	68.9641	180.5160	10
	84.9990C	84C	84.9990	26.9733	111.9723	69.2035	181.1758	8
	합계							109

- 기관별 배정세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85m<sup>2</sup> 이하 민영주택 10%범위 공급 (단위 : 세대)

구분	82A		82B		84A		84B		84C		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장애인	-	-	1	3	1	3	-	-	-	-	2	6
국가유공자	1	3	-	-	1	3	1	3	-	-	3	9
중소기업근로자	1	3	-	-	1	3	-	-	1	3	3	9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1	3	-	-	1	3	-	-	-	-	2	6
계	3	9	1	3	4	12	1	3	1	3	10	30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 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m<sup>2</sup>)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공급면적(m<sup>2</sup>) x 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 ÷ 3.3058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단,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일정계획(예정)

구분	일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 11. 25. (금)	일간신문 및 당사 홈페이지(추후 공개 예정)
견본주택 개관일	2022. 11. 25. (금)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64번지
특별공급 접수일자	2022. 12. 05. (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2. 12. 13. (화)	한국부동산'청약Home' (www.applyhome.co.kr)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접수일에 한국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 청약('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10:00~14:00) 가능합니다.
- 단, 견본주택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 서류를 모두 완비한 경우에만 접수가능.(필요서류 견본주택 별도 문의)
-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특별공급 자격요건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자기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li> <li>- 기관추천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구분	내용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li> </ul> </li> </ul>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점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 <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신청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 각 해당기관의 특별공급별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li> </ul> <p>※ 추천기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관련법규</th></tr> </thead> <tbody> <tr> <td>국가유공자 등</td><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td></tr> <tr> <td>장기복무 제대군인</td><td>「군인복지기본법」제10조에 따라 10년이상 복무한 군인</td></tr> <tr> <td>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td><td>「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td></tr> <tr> <td>중소기업 근로자</td><td>「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td></tr> </tbody> </table>	구분	관련법규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에 따라 10년이상 복무한 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구분	관련법규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에 따라 10년이상 복무한 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다첨자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특별공급 신청하여야 합니다.[신청시 주택형 변경 불가,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 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 바랍니다.</li> </ul>																				

• 특별공급 유의사항

구분	내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li>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li> <li>-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가 가능함.</li> <li>-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됨.</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 하여 신청하시기 바람.</li> <li>-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음.</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li> <li>-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청약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 및 주소로 예비입주자관련 안내를 하오니 연락처 및 주소불명 등 의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는 책임 지지 않음.</li> <li>- 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편집과정에서 오류 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와 상이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우선 하오니 반드시 승인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li> </ul>

III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견본주택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64번지
- 분양홈페이지 : <http://>
- 분 양 문 의 : 052)000-0000

※ 첨부자료 1. 사업지 위치 / 홍보자료

※ 첨부자료 2. 견본주택 약도